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5. 7. 12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 7. 18

다. 상정일자 : 제35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5. 8. 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시민봉사실장 문준호)

가. 제안이유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과태료부과기준이 동 규칙에 명시되었기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과태료부과시에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호적법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관련 조항을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허영훈)

호적법에 의한 호적신고 또는 신청을 정당한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호적과태료는 호적법 제132조의 2호에 의하여 호적법 시행규칙(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생, 사망의 신고를 받는 등의 관할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호적법 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369호, '95. 6. 5)이 개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1. 종전에는 과태료부과시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해태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시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제4조중 제1항 부과기준 조항과 <별표2>의 과태료부과기준표 및 제5조 중 제1항 과태료 산출근거이던 해태이유서 제출조항과 <별지 제1호서식>의 해태이유 서식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아 래-

대법원규칙 제1369호(1995. 6. 5)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해 태 기 간	과 태 료	
	제130조 위반	제131조 위반
1월 미만	10,000원	20,000원
1월이상 3월 미만	20,000원	40,000원
3월이상 6월 미만	30,000원	60,000원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불합리하게 산정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부과기준을 명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규 개정예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	---

제출년월일 : '95. 7. 1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대법원규칙 제1369호-'95. 6. 5)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 규칙에 명시되었기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과태료 부과시에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호적법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관련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대법원규칙 제1369호-'95. 6. 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따로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부과기준 및 면제)”를“(부과면제)”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하여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5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해태이유서”를 “신고서”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①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략)	제4조(부과면제) ①삭제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제5조(부과등) ①구청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이유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②~⑤(생략)	제5조(부과등) ①삭제 ②~⑤(현행과 같음)
제6조(사전징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u>해태이유서</u>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전징수) <u>신고서</u>